

## 8.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 안전 및 본교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6.22.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녹화장비, 모니터 장비 일체를 말한다.
-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검색, 삭제, 출력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로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의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 및 담당부서) ① 총괄책임관은 기획관리처장으로 하며 실무책임관은 총무차(과)장으로, 담당 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2019.2.8.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안내판 설치) ① CCTV설치 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 2 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7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의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는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 및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처리의 제한) ①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별지서식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화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호조치 등) ① CCTV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0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서식 1)

② 총괄책임관은 촬영된 본인이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당사자(요구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당사자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 3 장 보 칙

제12조 (위원회 운영) CCTV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보호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은 본교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2012.7.1.자구수정)

제13조 (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